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1/ 7 통권 176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미래 청년 창업 세정지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8)
 - 이해상충의 예방 실무방안
- 비과세되는 소득의 파악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
-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추가
- 국제청장, 미래를 이끌 청년 창업 현장을 듣다
- 2025년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 지점이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안됨 (p.11)

전직원 화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와 매출액과 세가액 계산방법〉

개념구분	과세가액 포함 원인·이유	과세가액 계산법과 세율, 기재방법, 대조
세금계산서 발행	재화·용역 공급액 ×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자료와 일치 확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누락, 중복 확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지불국세청 자료와 플랫폼 매출 비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 0.1/1.1 = 부가가치세임 국세청 매출자료와 결제대행 플랫폼사 매출과 중복누락 비교
간주임대료 상당액	전세금 보증금 × 연 3.1% × 10%	전세금 등 × 연 3.1% × 92일/365일 × 10%
자가공급	면세사업전용액, 타사업장 반출	해당 재화·용역의 장부가액, 시세 등의 10%
개인적 공급	자가사용 취득재화 등 10%	사용소비액의 미수취, 시가보다 낮은 가액 수취 × 10%
사업상 증여	자기생산, 취득재화	증여재화 등 × 10%, 제외① 견본품 ② 광고목적 불특정다수 무상배포, ③ 자기상품 구입자에 대한 증정품
폐업잔존재화	자기생산, 취득재화 중 남은 금액	폐업시 잔존금액 × 10% (제외: 사업종류 변경, 타사업장이전 등)
신탁재산 지위이전	위탁자의 지위이전가액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해당 재화·용역가액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칸의 해당액 × 10%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종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 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61호 / 주간 1호

2026. 1. 7.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가가치세 신고할 거래와 매출액과세가액 계산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8) - 이해상충의 예방 실무방안	2
세무·회계상담자문 (님들은무슨고민할까?)	-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 조경 수목공사 회계처리 - 문화재단의 음악회 후원 시 회계처리 - 중국 법무법인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비과세되는 소득의 파악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개선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8 9
직장인Survival	신뢰를 만드는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 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사전법규재산-400, 2025.06.25) -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 로 볼 수 없음 (서면법규재산-565, 2025.04.21)	11 12
세정뉴스와해설	‘국세청 신속행정’ 가산세 425억원 줄였다... 국세청장 “내년 과세처리기간도 단축”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 지점이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안됨	11
세무정보	-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추가 - 국세청장, 미래를 이끌 청년 창업 현장을 듣다 -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4 25 4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24

경영판단 원칙의 실무적 이해 (8)

- 이해상충의 예방 실무방안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이사회·경영진이 이해충돌 발생 시 신속하게 식별·격리·완화·보고·기록하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여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실무방안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 예방 체계 : 전사적 관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정책, 정의, 적용범위, 신고·회피·제척 절차, 제재를 명문화한다. 임원 이사의 외부활동·지분·특수관계 등 현황을 연 1회 등록하고 변동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한다. 거래처·투자·임직원 이해관계 등록 레지스터를 대조해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규 및 정기 윤리,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서약서 징구로 인지와 준수 문화를 내재화한다.

식별·신고 :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직무내용, 직무 관련자, 사적 이해관계, 제3자 관점 항목으로 사전 점검한다. 의심사례 인지 시 행동강령책임자·준법감시인에게 서면 신고하고 긴급한 필요 시 선 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다. 적용 범위 파악: 상장회사 특수관계자 규정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 거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격리·회피·제척 : 이해상충 관련 이사는 안건 배포 단계에서 이해관계 존재를 선언하고 토의·의결 과정 전체에 걸쳐 참여하지 않았음을 기명 기록한다. 이해충돌이 실질적이면 위원회, 이사회 제척 및 대체 멤버 지정, 필요 시 일시적 직무 재배정 조치를 시행한다. 조직 내 대체 불가·광범위 충돌 시 중립 제3자 위탁 또는 외부 독립위원회 검토를 활용한다.

공정절차 강화 : 사외이사 전원 또는 비관련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승인을 진행한다. 외부 자문 평가를 통해 법률·회계·등 공정성 의견 및 비교가격·정상가격 벤치마크로

거래조건의 합리성을 입증한다. 제3자 거래 가능성, 경쟁 입찰·비교견적 등 대안과 그 부적합 사유를 문서화한다.

승인·보고·공시 : 상법 제542조의9 해당 거래는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목적·상대방·규모 등 요지를 특정한다. 주총 보고: 해당 거래는 최초 정기주총에 목적·상대방·주요 조건을 보고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업종상 일상적 거래 예외와 대통령령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근거를 기록한다.

실행 통제 : 내부자정보 분리, 접근권한 통제, 기록관리 로깅을 적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차단한다. 이해관계 지속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기간 동안 대주주 및 임원의 지위·지분 변동, 조건 이탈, 이행지표를 정기 점검한다.

문서화·기록 : 이해관계 고지, 회피·제척, 독립성의 확인, 대안 비교, 공정성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외부자문, 비교견적, 정상가격 분석, 이익상충에 대한 관리계획, 교육·서약·신고서 원본을 일괄 보관한다. 추적성 확보를 위해 결정 전후 타임라인, 변경 사유,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특수관계 거래 등 : 제3자 정상가격·조건 입증, 독립위원회 전원 심의, 관련이사 전원 회피, 필요 시 소수주주 승인을 얻도록 한다. 신용공여·자금지원시 상법 금지·예외 요건 엄격 점검, 외부 법률의견과 배임 리스크 검토를 병행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모범규정 및 신고·회피 체크리스트 참고 적용한다.

위반 대응·시정 : 위반 의심 시 거래·의사결정을 일시 중단하고 독립조사를 개시한다. 시정 완화를 위해 조건 재협상, 독립평가 추가, 담당자 교체, 교육 재 이수 등 시정조치를 실행한다. 보고 공시에 있어서 내부 보고에 관계 법규 및 정관 및 규정 등을 준수하고, 필요 시 이사회·주총·시장 공시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실무적으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 등의 사전배포 자료 목록에 이해관계 등록현황 요약, 제척 명단, 공정성 분석 요약, 대안비교표를 표준 항목으로 포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승인 전 리스크 메모와 외부 법률 평가 보고서를 작성 검토하여 사후 쟁점을 최소화한다.

국적상실로 인한 국민연금 환급금 관련 문의

Q 퇴직한 직원 중 최근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해 지난 재직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과 그에 대한 환급금 이자가 회사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 (회사 납입분 및 환급금 이자)를 회사의 기타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회사가 부담한 연금 및 환급금이자 입금된 경우 기타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경 수목공사 회계처리

Q 회사 화단 정비공사(수국 꽃)로 천만원(부가세 별도)을 지출했는데,
이런 경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축물 (?) / 임목 (??))
비용(복리후생비 or 잡비 or 지급수수료 (??))으로 처리 가능한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감가상각 없이 자산만 올려놓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나무나 꽃이 없는 화단에 처음으로 식재를 하였다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에 있던 화단을 정비하여 다시 식재를 하였다면 당기비용(계정과목은 지출 목적에 맞게 회사에서 판단하여 처리)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화재단의 음악회 후원 시 회계처리

Q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 대한 후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음악회 팸플렛 등 홍보물에 후원기업에 대한 홍보(업체명 기재), 초대권 증정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후원금 지급절차는

- 문화재단에서 협찬 요청
 - 협찬요청에 따른 협찬약정(약정 시 해당 재단에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협찬금 지급
- 이럴 경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어떤 목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팸플렛 등 홍보물에 홍보업체 기재 등의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국 현지 법무법인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 안함

Q 중국의 현지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평소에는 월 정액으로 납부를 하고 법률 이벤트 발생시 별 건으로 추가로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률자문료 송금시 원천징수를 하고 송금을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A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한중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Q 일본 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비거주자)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개인이 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원천징수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A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이라면 소득세법 제156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되므로, 양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가지급전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 (취득가액 확인시)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가지급일의 다음 달10일까지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증권거래세 세율은 1만분의 43입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의 파악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는 특정기간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 각 납세자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측정이나 세금계산을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체계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없다.

연말정산은 한해의 근로소득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자신의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올해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출발이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근로소득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경우의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대표적인 것은 일직이나 숙직을 하고 받는 수당 및 여비인데,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을 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만 하며, 회사차로 업무수행을 하고 받은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

선생님들은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로, 기자는 취재수당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신문기자들도 월 20만원까지 활동비 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는다.

경찰이나 특수부대 군인들이 받는 위험 및 근무 수당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돼 혜택을 받는다. 더욱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정해진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받는 제복, 제모, 제화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무 수당

공장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210만원이하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

하지만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또한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한다.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

근로소득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대상인데,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식사대를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20만원은 비과세되고 3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또한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 중 최소 월 100만원은 비과세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는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의 근로제공도 포함되는데,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개선했던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 3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 4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 5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10년 100% + 5년 50%	7년 100% + 4년 50%



시중은행 예금 금리

은행(상품명)	최고금리(연 %)
SC제일은행(e-그린세이브예금)	3.25%
경남은행(The파트너예금)	3.15%
신한은행(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	3.1%
전북은행(JB123 정기예금)	3.1%
제주은행(J정기예금)	3.1%
수협은행(Sh첫만남우대예금)	3.1%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① 적용요건 (a and b)	a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b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한국 거주자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공제액

구분			합산액(①)	일괄공제(②)	공제적용액 [max(①, ②)]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인 : 자녀 2명 - 50세 비장애인 - 45세 비장애인	2억원	자녀 2명 : 1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상속인 : 자녀 2명 - 50세 비장애인 - 45세, 男, 장애인	2억원	자녀 2명 : 1억원 * 장애인 : 3.7억원	6.7억	5억원	6.7억원
상속인 : 자녀 2명 - 50세 비장애인 - 45세, 女, 장애인	2억원	자녀 2명 : 1억원 장애인 : 4.3억원	7.3억원	5억원	7.3억원

※ 장애인 3.7억원 : 남자 45세의 기대여명 36.9년(2021년 통계청 완전생명표 기준)

⇒ 37년 × 1,000만원

* 장애인 4.3억원 : 여자 45세의 기대여명 42.6년(2021년 통계청 완전생명표 기준)

⇒ 43년 × 1,000만원

* 상속인 중 장애인 자녀가 있을 경우 : 59세 이하의 남자 자녀가 1명 이상, 64세 이하의 여자 자녀가 1명 이상 있다면 합산액 (기초공제 + 인적공제)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더 큼



신뢰를 만드는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1. 명확하게 말하고, 애매함을 남기지 않기

신뢰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 범위, 다음 행동을 함께 제시해 의사소통의 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말의 속도보다 ‘일관성’을 지키기

빠른 답변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태도입니다. 항상 같은 기준으로 소통하고,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지는 경험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그 사람의 말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3. 듣는 태도가 신뢰의 절반을 만든다

커뮤니케이션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신뢰가 형성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이해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은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4. 문제 상황일수록 더 투명하게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상황을 숨기거나 미루기보다 조기에 공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동료로 인식되며, 오히려 신뢰가 강화됩니다.

5. 감정이 아닌 사실 중심으로 소통하기

의견이 다를 때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럴수록 개인의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업무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갈등을 줄이고, 대화의 목적을 다시 ‘업무 해결’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사전법규국조-421, 2025.06.23

Ⅰ 질 의

- 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자·배당 및 근로소득 신고 의무 있는지
- ②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만 신고 의무 있는지

Ⅰ 회 신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 판단은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128, 2024.07.25.

1.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국내 지점이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안됨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전법규부가-334, 2025.06.25

Ⅰ 질 의

- 신청법인이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Ⅰ 회 신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 "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

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규재산-565, 2025.04.21

■ 질 의

- 1차 임대차계약(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2차 연장계약(8개월)을 체결하고, 2차 연장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여 다른 임차인과 3차 신규계약(2년)을 체결한 경우로서
 - (질의1) 2차 연장계약(8개월)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이 합산 불가인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 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 신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의 연장계약(2차, 임차인 甲, 임대료 5% 인상)을 체결, 2차 연장계약 기간 만료 후에 그 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여 3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한 경우,
(질의1) 해당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인상)과 3

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질의2)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932, 2025.04.11

■ 질 의

- '22.11. 2.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22.12.30.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대금 납입
- '22.12.30.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 유상증자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날인 경우
 -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의 주식 수로 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신속행정’ 가산세 425억원 줄었다… 국세청장 “내년 과세처리기간도 단축”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관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은 줄이고, 과세자료 분석과 과세 실익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화·납부 전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간편한 조화·납부를 위해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노동부 대표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K-수출, 7천억 달러 시대 열었다… 세계 6번째 ‘수출 강국’ 우뚝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으며 글로벌 경제 영토를 다시 한번 확장했다.

1948년 첫 수출 기록 이후 77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6,000억 달러를 성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이번 7,000억 달러 달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로 기록된 성과다. 특히 우리나라는 6,000억 달러 달성 당시에는 세계 7위였으나, 7,000억 달러 고지에는 6위로 올라서며 글로벌 주요국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증명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 관세 이슈 등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은 올해 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춤했으나, 6월부터 6개월 연속 해당 월 실적 최대치를 경신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65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월별 수출액 1위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관세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앞두고, 수입 기업들의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의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 9월 1일 첫 시행 이후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접수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제작되었다. 가격신고서 작성 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오류 사례와 참고할 만한 우수 제출 사례를 시각적으로 편집해 수록함으로써, 신고대리인과 기업 담당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마다 제각각인 자료 형태를 폭넓게 인정하되, 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추가

- 국세청, 2025. 12

- 현금영수증 제도는 '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24년) 125개 (13개 ↑) → ('25년) 138개 (13개 ↑) → ('26년) 142개 (4개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하였습니다.

1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3	낚시장 운영업
2	사진 처리업	4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발급 의무)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하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Ⅰ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Ⅰ

①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②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③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연 1천만 원 한도)
- (의무 위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할인 혜택 등을 통해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니
- 현금영수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임을 인식하여 사업자의 성실한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10년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 ('24년) 125개 (13개 ↑) → ('25년) 138개 (13개 ↑) → ('26년) 142개 (4개 ↑)



2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26.1.1.부터 기념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Ⅰ '26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Ⅰ

업종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523961)	47842	▶ 각종 기념품, 조화,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예시) 기념품 및 기념 메달 소매, 모조 장식품 소매, 선물 가게, 조화 소매, 휘장(귀금속제 제외) 소매 등
사진 처리업 (749403)	73303	▶ 사진 및 비디오의 현상 처리, 인화 및 확대 처리 등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 (슬라이드 제작, 오래된 사진 복원 및 투영도 수정 등을 수행하는 경우 포함) ▶ (예시) 사진 인화·사진 처리·사진 복원 서비스 등
낚시장 운영업 (924914)	91231	▶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24915)	91239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등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가맹점 가입기한
개 인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번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도선 사업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법 인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금지 행위

- 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이외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④ 다른 현금영수증 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 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⑥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소비자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 ⑦ 무기명 발급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⑧ 기명 발급 현금영수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 취소하고 타인에게 재발급하는 행위

- 또한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24-13호, '24.5.14.)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참고자료실 → (17번) 소비자화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경로
홈택스	가 입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발 급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손택스	가 입	▶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발 급	▶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ARS (☎126)	가 입	▶ ☎126 → ①번 (홈택스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①번 (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 (10자리) → ①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 (4자리) → ①번 (가맹점 가입)
	발 급	▶ ☎126 → ①번 (홈택스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①번 (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 입력 (10자리) → 비밀번호 (4자리) → ①번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 거래금액 입력 + # → ①번 (소득공제용) 또는 ②번 (지출증빙용) 선택 → 발급내역 음성안내

3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직전 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②) ▶

대상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매업, 음식점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제외)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

요건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공제율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가입의무 및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금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010-000-1234)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

①	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②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을 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
③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 등으로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 고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

6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05년) 4.5억 건, 18.6조 원 → ('23년) 46억 건, 167.1조 원 → ('24년) 49억 건, 180.7조 원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오니
 -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 소비자 상대업종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 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거부 금지	▶ (10만 원 미만)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의무 ▶ (10만 원 이상) 상대방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 (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경감
기 타 제 재	▶ 미가맹 시 •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 일반가맹점과 동일

붙임 2 - 자주 묻는 질문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Q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 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③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손택스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국세상담센터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1(비밀번호 설정) > 1(가맹점 가입)

Q3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
손택스	국세청 손택스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국세상담센터	☎126 > 1(홈택스 이용문의)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입력 > 1(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 # > 거래내역 입력 + # > 소득공제용(1번), 지출증빙용(2번) 선택 > 발급내역 음성안내

Q4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화면 하단 자료실 > 검색창에 ‘스티커’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이미지 파일 조회 > 첨부파일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를 내려받아 사용

Q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Q6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1-전자세원-0064, '21.01.25.)

Q7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9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Q10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1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나요?

- 거래대금이 2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6일 (금)	12월 29일 (월)	12월 30일 (화)	12월 31일 (수)
미 달 러 (USD)	1460.60	1442.30	1433.90	1434.90
일 본 엔 (JPY)	937.27	921.77	919.08	917.63
영 국 파 운 드 (GBP)	1972.76	1946.60	1936.84	1932.31
캐 나 다 달 러 (CAD)	1068.12	1055.43	1047.52	1047.72
홍 콩 달 러 (HKD)	187.84	185.60	184.46	184.41
위 안 화 (CNH)	208.37	205.38	204.53	204.76
유 로 화 (EUR)	1721.10	1698.45	1688.35	1685.72
호 주 달 러 (AUD)	978.97	968.36	959.92	961.02
싱 가 폴 달 러 (SGD)	1138.07	1122.41	1115.75	1117.5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61.09	356.26	353.18	354.56

국세청장, 미래를 이끌 청년 창업 현장을 듣다

- 국세청, 2025. 12

- 임광현 국세청장, 12.17.(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청년 창업 통계를 공유하고, 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설명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17.(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최근 10년('15년~'24년)의 청년(19세~34세)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며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하였습니다.
 -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0만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눈에 띄며,
 - SNS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도 청년 창업 관심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확인됩니다.



- 청년 창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된 반면,
 -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져,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에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합니다.
 - 다음으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하여 사업초기부터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또한,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 역시 강화됩니다.
 -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 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여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마지막으로, 국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를 확대하며,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하겠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약표]

1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폭넓은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확대) 조사 유예 (최대 2년 간)	참고 1
2 사업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세금 자문서비스 제공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신규·예비 창업자 에게 1:1 맞춤형 세무 자문서비스 제공	참고 2
신고 안내 지원 서비스	세무서 통합민원창구 위탁인력을 통한 신고 안내 지원	참고 3
세금 정보 접근성 개선	(신규) 국세청 누리집에 「 청년세금 」 코너 신설(25년말)	참고 4
3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 제도		
세액감면 사전 안내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 별도 제공(확대) 소득세는 '25년 귀속부터 안내)	참고 5
청년 창업 유동성 지원	납세담보 제공 면제 (스타트업 기업 최대 1억 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 (0.1%p 일괄 인하)	참고 6
	청년 창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참고 7
4 청년 통계 공개 및 통계 접근성 개선		
다양한 국세통계 발굴	(신규) 청년 창업 관련 다양한 국세통계 를 시리즈로 발굴 공개 (신규) 국세통계포털에 「 청년통계 」 코너 신설, 맞춤형 검색 기능 마련	참고 8

-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종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세금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업자 (주)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에서도 청년 창업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 청년 창업 간담회 개요 및 간담회 사진

□ 간담회 개요

○ (일시) '25. 12. 17.(수) 16:10 ~ 17:20(70분)

○ (장소) 판교창업존*(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허브팀에서 운영하며, 예비창업자 및 사업기간 7년 미만 창업자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인프라 제공(현재 105개 기업이 입주, 청년 창업 기업 약 40개 기업)

○ (참석대상) 국세청장, 기획조정관, 각 실무 국·과장 등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외 2명, 7개 입주기업 대표

○ (간담회 내용) ① 창업 청년이 궁금해하는 세금 및 세제지원 제도 안내, ② 청년 창업통계, ③ 창업 청년 애로·건의사항 및 Q&A

□ 청년 사업자의 세무상 궁금증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자의 세무상 궁금증 및 건의사항

○ 사업초기 시제품, 인건비 등 선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처리 방법은?

○ 법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보다 쉽고·간편하게 알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 고용 창출과 R&D투자가 활발한 딥테크 창업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계획이 있는지?

○ 사업초기 발생한 적자에 대해, 이후 흑자 전환 시에 이월 결손금 공제 방법은?

○ SaaS* 플랫폼 사업 초기 개발비용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소프트웨어를 회사 서버에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법인이 타인 소유 특허권·상표권 등을 무상사용·고가사용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 2024년 귀속 청년 관련 주요 국세통계

(만 명, 조 원)

구분	항목	전 체	30세 미만 및 40세 미만		
			소 계	30세 미만	40세 미만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통계번호 : 3-1-3)	인원	1,193.2	325.9 (27.3%)	132.0 (11.1%)	193.9 (16.2%)
	금액	1,578.0	248.9 (15.8%)	52.2 (3.3%)	196.7 (12.5%)
근로 연말정산 급여총계 (통계번호 : 4-2-3)	인원	2,107.3	824.1 (39.1%)	352.7 (16.7%)	471.4 (22.4%)
	금액	964.7	311.6 (32.3%)	95.5 (9.9%)	216.1 (22.4%)
사업자 (통계번호 : 9-8-5)	가동	1,041.5	163.6 (16.1%)	36.0 (3.5%)	127.6 (12.6%)
	신규	121.8	44.7 (36.7%)	15.1 (12.4%)	29.6 (24.3%)
	폐업	100.8	30.0 (29.8%)	9.1 (9.0%)	20.9 (20.7%)
생활업종 사업자(가동) (통계번호 : 9-8-27)		53.7	23.6 (43.9%)	8.4 (15.6%)	15.2 (28.3%)

붙임 2 - 청년 창업 관심업종 변화상

1 추진 배경

- 청년 지원 정책 수립 및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청년층의 창업 관심도가 높은 통계를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첫 번째 시리즈로 최근 10년(2015년~2024년)의 국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자 추이, 창업 첫 해 평균 매출액, 창업 후 1년 생존율을 비교·분석하고,
 - 청년의 창업 관심업종과 강세업종을 통계로 제공하여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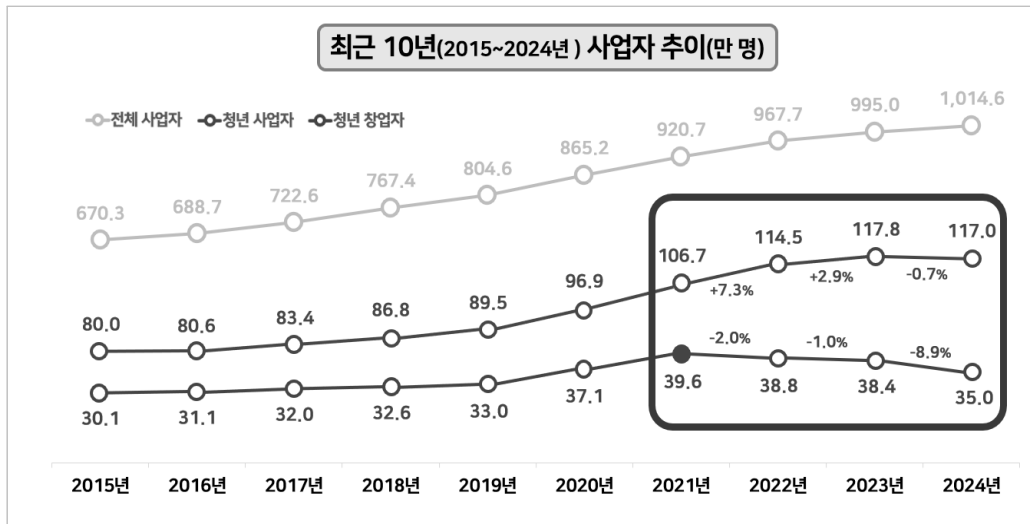


2 청년 창업자 추이

※ 청년 창업자 : 당해연도 신규 개업한 사업자 중 19세~34세(청년기본법 제3조)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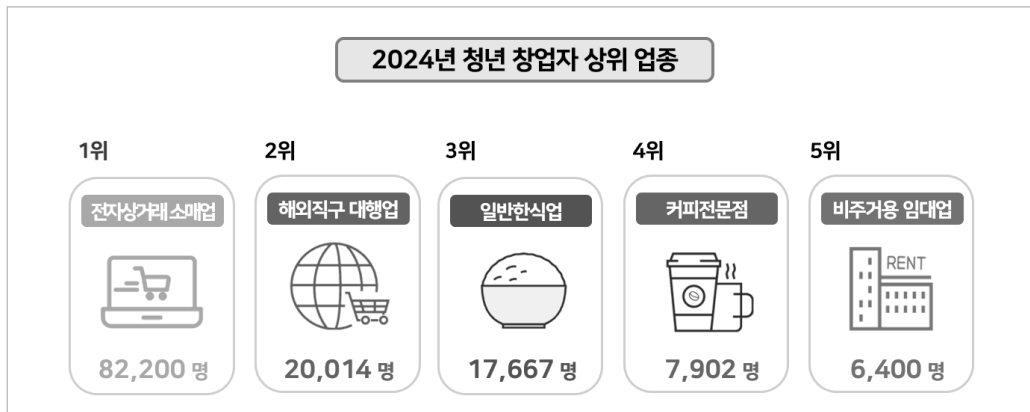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전체 사업자와 청년 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21년 이후 신규 개업하는 청년 사업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 청년 사업자는 2022년 이후부터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2024년에 최초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규 개업하는 사업자의 감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3 청년 창업 관심업종

□ 2024년 기준 청년 창업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일반한식업, 커피전문점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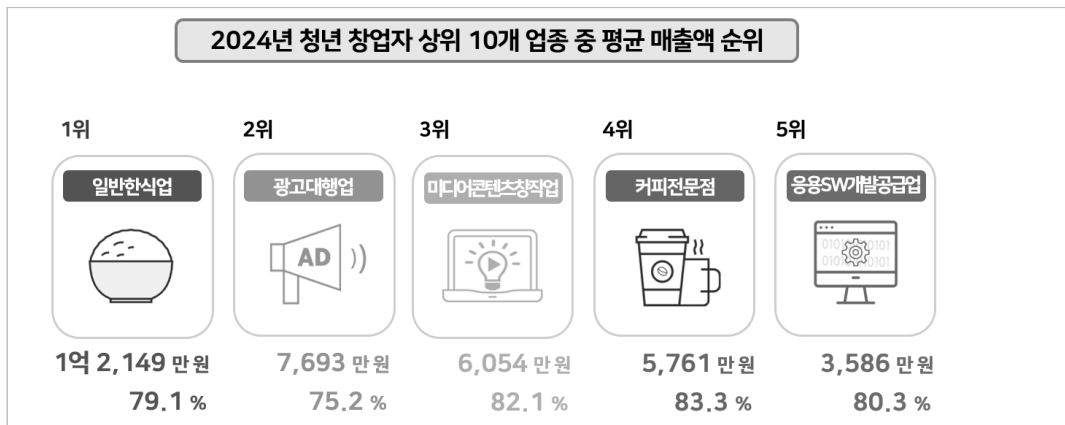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종(1위, 2위, 6위)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10위)이 강세를 보입니다.

【 2015년, 2024년 청년 창업자 상위 업종 】

순위	2015년		2024년	
	업종명	창업자 수(명)	업종명	창업자 수(명)
1위	전자상거래업	35,775	전자상거래 소매업	82,200
2위	한식음식점	21,481	해외직구대행업	20,014
3위	비주거용 임대업	18,819	일반한식업	17,667
4위	방문판매업	5,865	커피전문점	7,902
5위	상품종합중개업	5,593	비주거용 임대업	6,400
6위	의복 소매업	5,03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4,756
7위	분식점	4,623	광고대행업	4,430
8위	개별화물(6톤미만)	4,615	건축물 일반청소업	4,127
9위	비알콜 음료점업	4,382	응용 SW 개발·공급업	4,015
10위	미용실	4,270	미디어콘텐츠창작업	3,496

- 2024년 기준 청년 창업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일반한식업(1억 2,149만 원), 광고대행업(7,693만 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6,054만 원), 커피전문점(5,761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024년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비주거용 임대업(90.1%), 커피전문점(83.3%), 미디어콘텐츠창작업(82.1%) 순으로 확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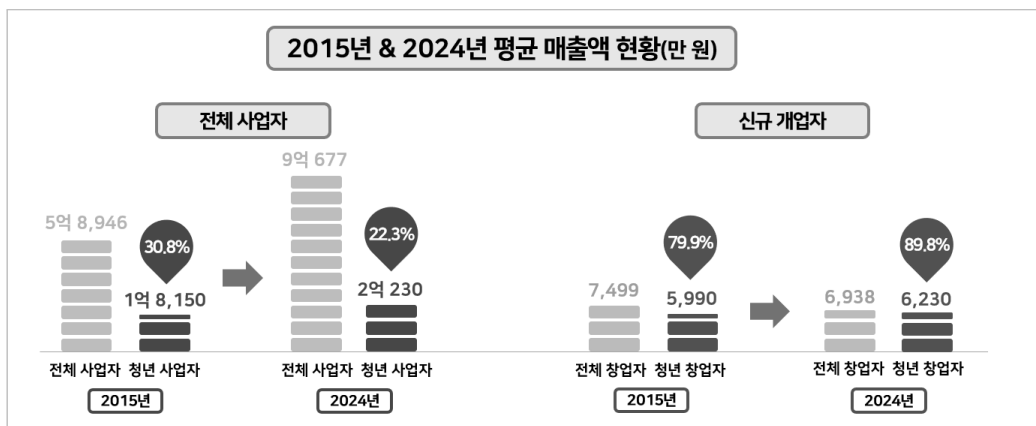


【 2024년 청년 창업자 상위 업종의 창업자 수평균 매출액·1년 생존율 】

순위	업종명	창업자 수(명)	평균 매출액(만 원)	1년 생존율(%)
1위	전자상거래 소매업	82,200	1,232	65.9
2위	해외직구대행업	20,014	308	62.8
3위	일반한식업	17,667	12,149	79.1
4위	커피전문점	7,902	5,761	83.3
5위	비주거용 임대업	6,400	571	90.1
6위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4,756	1,319	61.1
7위	광고대행업	4,430	7,693	75.2
8위	건축물 일반청소업	4,127	717	68.7
9위	응용SW 개발·공급업	4,015	3,586	80.3
10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3,496	6,054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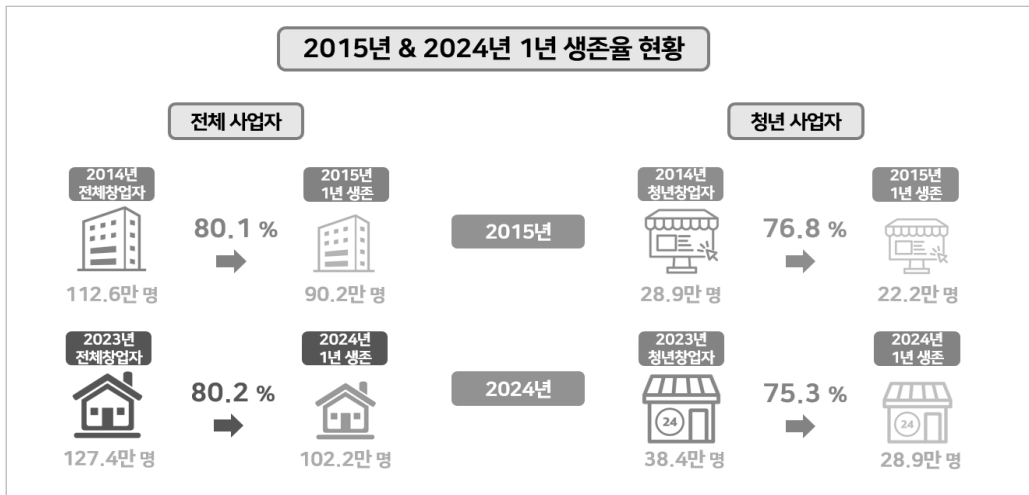
4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및 1년 생존율 비교

- 청년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에 전체 사업자 평균 매출액의 30.8%를 차지 하였으나, 2024년에는 22.3%로 감소하였습니다.
- 반면, 2015년에 신규 개업한 청년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신규 개업한 전체 사업자 평균 매출액의 79.9%에서 2024년에는 89.8%로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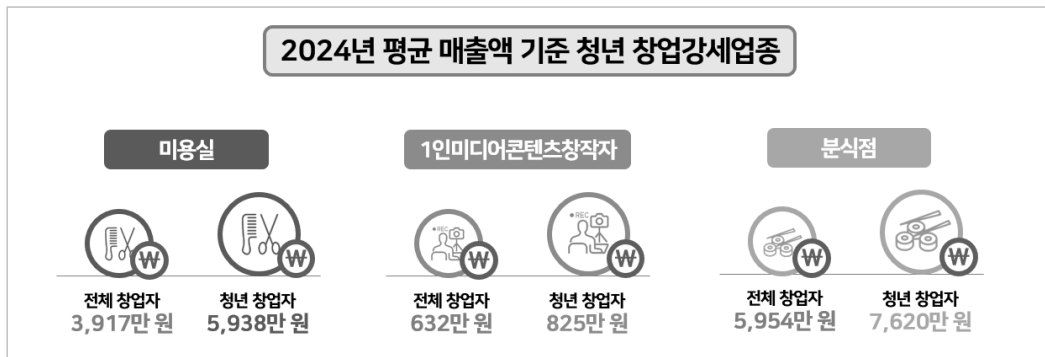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청년 사업자는 75.3%로 전체 사업자 80.2% 보다 낮으며, 청년 사업자의 1년 이상 생존율은 2015년 76.8%에서

2024년 75.3%로 낮아졌습니다.



5 청년 창업 강세업종

- 2024년에 신규 개업한 전체 사업자에 비해 신규 개업한 청년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분식점이 대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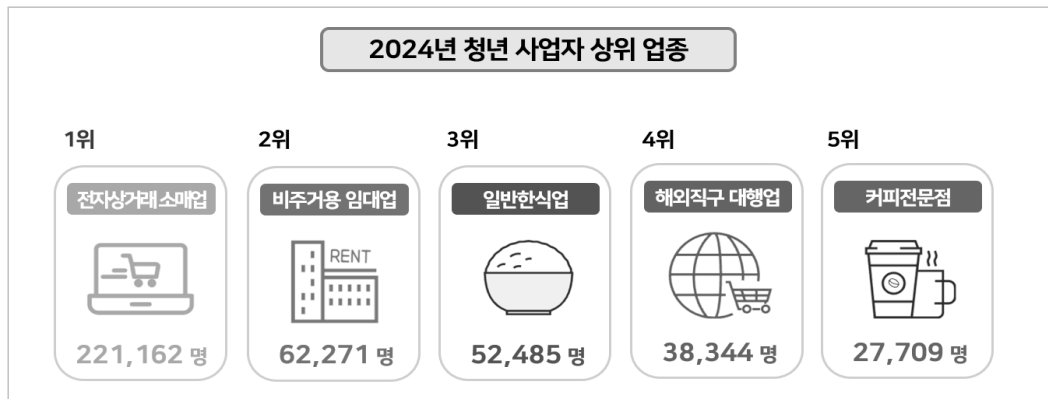
- 최근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등 마케팅 채널이 다변화되고,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상콘텐츠 창작업(2위, 10위)과 SNS마켓(5위)이 청년 창업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2024년 평균 매출액 기준 청년 창업 강세업종】

순위	업종명	평균 매출액(만 원)		비율(%) (청년 ÷ 전체)
		전체 창업자	청년 창업자	
1위	미용실	3,917	5,938	151.6
2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32	825	130.5
3위	분식점	5,954	7,620	128.0
4위	치킨전문점	12,386	15,143	122.3
5위	SNS마켓	830	989	119.2
6위	주택신축판매	4,939	5,845	118.3
7위	한식음식점	10,269	12,149	118.3
8위	헬스클럽	8,113	9,474	116.8
9위	태양력 발전업	240	274	114.2
10위	미디어콘텐츠창작업	5,320	6,054	113.8

6 2024년 청년 사업 현황

□ 2024년 기준 계속해서 사업하는 청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업, 비주거용 임대업, 일반한식업, 해외직구대행업 순으로 많았습니다.



○ 2015년과 비교하면, 시장 진출입이 쉽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수요가 많은 해외직구대행업(4위), 커피전문점(5위),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7위), 응용 SW 개발공급업(9위)이 새롭게 상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2015년, 2024년 청년 사업자 상위 업종 】

순위	2015년		2024년	
	업종명	사업자 수(명)	업종명	사업자 수(명)
1위	전자상거래업	76,596	전자상거래 소매업	221,162
2위	비주거용 임대업	54,184	비주거용 임대업	62,271
3위	한식음식점	52,303	일반한식업	52,485
4위	의복 소매업	15,334	해외직구대행업	38,344
5위	미용실	14,971	커피전문점	27,709
6위	개별화물(6톤미만)	14,963	주거용 임대업	26,595
7위	상품종합중개업	13,391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19,068
8위	건설장비운영업	12,011	미용실	16,307
9위	방문판매업	10,906	응용 SW 개발공급업	13,091
10위	분식점	10,159	네일숍	12,795

참고 1. 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혜택

- 현행 제도 ※ 국세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참조
- 일자리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20.1.1. 이후 설립된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1명을 2명으로 보아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

구 분	요 건 (조특령 §5①)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할 것 * 연령 요건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
법인사업자	연령 요건 충족 & 최대주주·최다출자자일 것

□ 개선 방안

- (제도 개요) 신규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유예

* 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대비 2%(최소1명) 이상 증가

**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유예신청서 교부 → 조사착수 5일 전까지 신청



○ (우대 혜택)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폭넓은 유예 혜택 부여

* ①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등 조특령 §5① 요건 충족 & ②개업(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 근로계약 1년 이상 등 조특법 시행령 §23의④에 따른 근로자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세무조사 유예신청서*를 이메일, FAX 등으로 조사관서에 제출

*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일자리창출기업 유예요건 및 신청을 안내

참고 2. 청년 창업자 사업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제도 개요

○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창업자 등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 지원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단장)과 나눔세무사·회계사(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중 위촉, 임기 2년, 연임 가능)로 구성

□ 지원 내용

주기	구 분	지원 내용
창업 단계	창업자 멘토링	신규(예비) 창업자 등에게 1:1 맞춤형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사업성장 단계	무료 세무자문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청년창업자 등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바쁜 생활활동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장애인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폐업 단계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영세 사업자 등의 조기회생과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신청 방법

○ 홈(손)택스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보호]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126 → ③번)하여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지원 범위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상담

* 재산세(양도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사항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활용 예시

○ 청년 창업자의 사업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①창업자 멘토링, ②무료 세무자문, ③ 찾아가는 서비스) 활용 예시

| 사업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

① 스타트업을 준비하던 청년 창업가 A씨는 본격적인 사업 개시에 앞서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에 대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국세청의 창업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많은 세무사 멘토를 만났습니다. 멘토는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멘토링을 통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로부터 세무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②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B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B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신고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받아 더 많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혼자서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가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쉽게 해결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③ 전통 시장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세무 관련 교육을 따로 받으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나눔세무사가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C씨의 사업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직접 세금 신고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상담해 주었습니다. C씨는 “매장 문을 닫지 않고도 필요한 세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말 편리했다.”며,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고 3.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 제도 설명

○ 세금 신고 등이 어려울 수 있는 영세·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상담·안내 등 실시

-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창구 등에 위탁인력 123명을 배치(세무서당 1~3명)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업체 주관으로 월별 납세자 대상 교육 실시



□ 신청 방법

- (상담 및 안내) 위탁인력이 배치된 세무서를 방문 시 무료로 서비스 제공
- (교육) 「납세자 세금 전자신고 교육」 카페 인터넷 신청

참고 4. 국세청 누리집 청년코너 신설 및 소통창구 마련

□ 개선 사항

- 국세청 누리집 카테고리 「청년세금」 코너 신설('25년 말)
 - 분야별 산재해 있는 창업 관련 법령과 감면제도 등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접근하여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소득세법) 등
 - 청년 창업 정보 일괄 조회·제공하고, 감면제도 컨설팅 신청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홈택스(바로가기)와 연계하여 편의성 대폭 향상

참고 5.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사전 안내

□ 제도 개요

- (감면 요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년간 일정비율 세액 감면
 - * 광업·제조업·음식점업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만 대상에 해당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창업도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우대
 -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 시 제외 가능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공제 ■

구분	기본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창업중소기업	-	5년 50%
청년창업·생계형	5년 50%	5년 100%

※ 감면율은 '26.1.1. 이후 신고시를 기준으로 함

- (감면 업종) 조특법§6③에서는 제조·건설·음식업 등 감면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배제

□ 신고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2호의2 서식) 작성하여 제출

□ 제도 안내

- (소득세) '25귀속 종소세 신고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 청년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안내문을 발송
- (법인세) 홈택스 신고 시 절세도움말 등 청년 창업기업이 세제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안내 제공 중*

*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공

참고 6. 청년 창업 유동성 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신고납부기한 연장)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신고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압류·매각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년 범위 내 지원
 -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압류·매각유예 가능
- (납세담보 완화) 창업 초기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납부기한연장 등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대행수수료율을 각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세·종소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0.8% → 0.4%)된 수수료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추계(단순·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자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현행	종전	현행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0.8%	0.4%	0.5%	0.15%
일반*		0.7%		0.4%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신고·납부기한연장)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 (압류·매각유예)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⑥ '압류매각의 유예(채납처분유예) 신청'

참고 7.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 제도 개요

- (부가가치세 환급)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 (조기환급) 사업설비 신설·취득, 영세율 수출 등 사유
 - (일반환급) 재고자산 매입, 예정고지 과다 등 조기환급 이외

□ 추진 방안

-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 하게 지급하여 창업초기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 신고 기간 경과 후 조기환급 15일, 일반환급 30일 내 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중소·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23.4월 추가)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코트라 (KOTRA) 선정 수출 관련 기업 - (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관세청·코트라 (KOTRA) 선정 수출 관련 기업 (중견기업은 '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법인에 한 함)
피해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경남 산청군·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등)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참고 8. 청년 창업 통계 공개 및 통계 접근성 개선

□ 개선 사항

- 청년 지원 정책 수립과 유용한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관련 통계 콘텐츠 발굴

- 청년 창업 관심업종인 IT 업종 및 음식업종 등 업종별 통계와 창업 유망지역, 지역별 창업 선호업종 등 지역별 통계 공개
- 연령대별로 공표하는 국세통계('25년 53개)의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여 청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개선
 - * (현행)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등 → (개선) 청년(19세~34세) 구간 추가
-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청년 관련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 통계 코너 신설, 포털 화면 구성 변경을 통해 접근성 강화

참고 9. 창업 관련 세금 오해와 진실

□ 안내 배경 및 내용

- 각종 SNS 등을 통해서 잘못 전파되거나 평상시 오해하기 쉬운 세금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세금에 대한 오해, 팩트체크! |

■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

- ☞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용 요일은 관련 없음. 다만, 일반적으로 주말 사용분에 대해서는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명확하게 갖출 필요가 있음

■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하면 세무조사 한다는데?

- ☞ 실제 사업하는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유오피스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중이라면 문제 없음. 다만, 감면·기타 목적 등을 위하여 실제 사업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직권폐업되거나 혹은 추가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개업초기 수익이 나지 않는데, 대표이사 월급 받아도 되나요?

-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사람보다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개업 전에 구입한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 가능,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함
(1~6월 ⇒ 7월 20일, 7월~12월 ⇒ 익년 1월 20일)

■ 법인명의로 구입한 차량... 주말 나들이에 사용하면?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 가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비용 인정이 제한됨

■ 부가세 납부기한이 도래했는데, 거래처 수금이 안되어 자금이 부족하면?

- ☞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 2025. 12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참고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3조 1,154억 원)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1,815억 원입니다.

※ <붙임 2>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참고

-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Cido Car Carrier Service Ltd(2,132억 원)입니다.

□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하였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9,9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24) 9,666명, 6조 1,896억 원 → ('25) 11,009명(1,343명 ↑), 7조 1,815억 원(9,919억 원 ↑)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명, 억 원, %)

구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11,009	71,815	6,848	40,661	4,161	31,154
비율	100.0	100.0	62.2	56.6	37.8	43.4

-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

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2,212억 원(72.7%)입니다.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수도권	수도권 외
인원	개인	6,848	3,938	2,910
	법인	4,161	2,720	1,441
	합계(비율)	11,009(100.0)	6,658(60.5)	4,351(39.5)
체납액	개인	40,661	27,685	12,976
	법인	31,154	24,527	6,627
	합계(비율)	71,815(100.0)	52,212(72.7)	19,603(27.3)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체납자입니다.
- 이들 중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사례 2	차명 보유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에도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사례 3	토지 양도대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고 세금을 안 낸 체납법인

-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2,165건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분납하여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였거나 2억 원 미만이 되어 공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공개 제외 1,156명(개인 693명, 법인 463개 업체)

- 지난 국세정보위원회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 고액·상습체납자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기 전 사전적 제재 차원에서 행정적 제재인 감치 명령을 도입('20.1월)
- 이들은 체납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해당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였으며 감치 의결 하였습니다.
-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감치 안내하여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 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명단 공개 법령 (「국세징수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①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대상 및 절차

☐ 감치 신청 대상

- ①국세 3회 이상 체납, ② 체납 1년 경과, ③ 체납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

☐ 감치 진행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감치 의결 → 검사에게 감치 신청 → 법원의 결정에 의해 30일 범위 내 감치

붙임 3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의결 사례

1. 체납발생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여 세금을 안 낸 체납자

☐ 체납발생 원인

- 체납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자로 현금매출 과소신고 소명안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 체납 발생을 예상하여 보유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
 - 장기간 운영하던 음식점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건물 완공하여 음식점업 운영중이며, 음식점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조치 내용

-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 체납자와 배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으로 고발
-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2.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 체납발생 원인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차를 리스하여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외국 갤러리에서 수 억원 상당 그림 등 구입
 - 수입금액을 자녀 또는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수령하여 은폐

□ 조치 내용

- 실거주지를 수색하여 미술품·조형물 12점, 명품 핸드백 18점 등 압류
-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3.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수령하여 은닉한 체납자

□ 체납발생 원인

- 체납자는 부동산운영관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수십억원이 입·출금되며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사용
 -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

□ 조치 내용

- 예금채권, 비상장주식 등 압류
-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4.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한 체납자

□ 체납발생 원인

- 체납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 납부능력

- 체납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에서 고액의 급여가 발생하여 해당 법인에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요청하였으나 불응

- 채납자는 해당 법인의 잔여 보유주식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고급자동차를 다수 보유하여 사치생활

☐ 조치 내용

- 급여채권 압류, 고급자동차 3대 압류
-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5. 처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채납자

☐ 채납발생 원인

- 채납자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을 운영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나 본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무납부하여 □□억원 채납

☐ 납부능력

- 개인 고철업 폐업 후 처제 명의로 고철업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는 한편,
 -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자 명의의 고가자동차 운행

☐ 조치 내용

- 주거지 수색 실시하여 동산과 보험금채권 압류
-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6.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채납자

☐ 채납발생 원인

- 채납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 채납

☐ 납부능력

-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며, 자녀 중 하나는 해외 장기 체류 중
 - 가족 전체 신고소득의 몇 배를 소비지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림
 - 다른 자녀는 최근 지방 대도시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



□ 조치 내용

- 예금채권, 보험금채권 압류
-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 예정

붙임 4 - 고액·상습채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 개요

- 지급대상 : 채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채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 ~ 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수
 - * 상담·불복·제보 《탈세 제보》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사례

- 채납자의 채권 : 채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 채납자의 차명재산 : 채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 채납자의 위장전입 : 채납자가 친인척 주소지로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제3자 명의 고급주택에 실거주하며 골드바, 미술품 등 구입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부동산 : 채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